

1/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천자현(千慈賢)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화해의 국제정치」로 박사 학위를 받고 존스홉킨스대학의 AICGS(Americ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German Studies) 박사 후 과정을 다녀왔다. 화해, 평화 연구와 외교정책이 관심 연구 분야이며, “Have Japan and Korea Reconciled?-Focus on Three Stages of International Reconciliation”(*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The Role of Compensation in Sino-Japanese Relations”(*Handbook of Memory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등의 논문이 있다.

1. 들어가며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쟁과 식민지배가 종료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그 잔재는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두 공간에 다르게 남아 있다. 한 예로, 한국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반감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¹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 결과라기보다는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인의 66.4%가 한국인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197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² 유럽이 홀로 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을 경험하고도 유럽공동체(EU) 형성에 이르게 된 것에 비해,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의 현재인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특히 한일 간의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다. 이들 연구는 역사적·외교사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국내정치적 관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역사적 접근법이다. 야스쿠니 신사와 교과서 문제 등을 바탕으로 ‘과거의 정치화’를 통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이다.³ 식민지배와 전쟁 등에서 비롯되는 기억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역사적 적대 관계라는 설명은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인정받아 왔으나 변동의 폭이 큰 한일 관계를

1 아산정책연구원, *Policy Report*, 2014. 3.

2 『朝日新聞』, 2014. 12. 20.

3 David Hundt and Roland Bleiker, "Reconciling Colonial Memories in Korea and Japan," *Asian Perspective* 31(1), 2007, pp. 77~82.

4 Thomas Berger, "Power and Purpose in Pacific East Asia: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갈등에 방점이 찍힌 역사적·외교사적 분석들에 의하면 한일 관계는 악화된 상태가 줄곧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시기도 상당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역사적 접근법만으로는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몇몇 학자들은 국제 정치 이론에 기반한 여러 설명을 제시했다. ‘유사동맹 모델’은 동맹 이론에서 연루의 두려움과 포기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으로, 미국의 안보의지가 약화되면 포기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피후견국 사이의 협력이라는 변수가 후견국의 안보확약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또한 우승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안보재를 나누어주는 안보 트라이앵글 구조 속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 축소가 두 동맹국의 포기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불개입가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개입-연합정치가설’은 양국 협력의 증감이라는 현상을 미국이라는 제3국의 영향력과 더불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국가의 외교정책에 압도적 영향력을 갖는 미국의 정책 변수와, 한국과 일본 내의 지배 연합의 변화라는 변수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한국과 일본의 정권 변화 등 국내 정치적 의도에 의해 한일 관계가 결정된다는 접근 역시 여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 크게는 지도자와 민족주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김호섭은 한일 관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지도자가 언제나 이

5 Victor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June 2000.

6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보』 제 37권 3호, 2003, 131쪽.

성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역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대통령 재임 시에도 양국 관계에 큰 문제없이 협력이 가능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리더에 따라 한일 관계가 결정된다는 연구 역시 한계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에 의해 양국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논의도 국내정치와 한일 관계를 연계시키는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들은 주로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를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은 일본 사회를 단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한일 갈등의 고조는 국내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동원하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며, 국내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내정치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독도 및 센카쿠(尖閣) 분쟁화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영토 문제는 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주권과 정체성이 집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지지를 결집하기 용이하다.⁸

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와 경제 등 정책부문에서는 반일주의적 입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를 제고하는 호국의 민족주의적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했다.⁹ 그러한 과정에서 반일적 민족 영웅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에 대한 항쟁을 통해 국가를 구해낸 민족 영웅은 일본에 대항해 한국의 국가 권위를 수립하는 것과 직결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반일민족주의는 한국의 국가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¹⁰

7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제29호, 2009.

8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제99호, 2013.

9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제99호, 2012, 128쪽.

10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권과 한일관계: 냉전인식을 둘러싼 공감과 괴리 사이에서」,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박정희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53쪽.

이러한 역사적 접근, 국제 정치적 접근, 그리고 국내 정치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이들 연구는 한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일 관계를 특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일 관계는 보편적 국제 정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제 정의론, 이 중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춰 한일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정의론이라는 보편적인 이론틀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갈등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화해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애증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양국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기성세대들에게 고착화되어 온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는 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회복적 정의라는 패러다임이 지금의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이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를 위한 것으로 회복적 정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복적 정의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후 보상의 개념을 결합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군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일본 시민단체들의 설립을 197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과정을 분석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일본 정부에 반영되는 과정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한일 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2. 회복적 정의의 이론적 검토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국제 정의론의 한 영역으로,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의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법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 정치 특히 이행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관계를 설명할 것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지만,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인 회복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 정의론의 또 다른 입장인 징벌적 정의를 이론적으로 함께 검토함으로써 국제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국제 정의론의 두 가지 입장과 각각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징벌적 정의

크로커(D. Crocker)는 정당한 응보적 정의에 찬성하면서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응보적 정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념에 반대한다. 징벌적 정의는 가해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 사태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공정한 재판과 이를 통한 정당한 징벌은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

<표 1> 국제 정의론의 분류

국제 정의론의 분류	징벌적 정의	회복적 정의
핵심 개념	처벌	인정, 사과
주요 당사자	가해자, 사법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한계	① 인과 관계 불명확 ② 국내 정치 또는 국내법 논리에 영향	잘못 규명 부족

화의 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당한 징벌의 실행 이후, 가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닌 공존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징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재판과 불공정한 판결, 그리고 과도한 징벌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¹

이와 유사하게 오페(Offe)는 화해가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정한 처벌과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와 희생자,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구별되어야만 이들의 관계도 동등한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가 공정하게 처벌을 받고 응징적인 정의가 확립될 수 있는 기본 규범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해자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응징하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사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때 정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극복이란,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쳐서 드러내어 가해자에 대한 적당한 법적 처벌 및 공개적 사과 요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방식은 곧 가해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강경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페의 방식에서 용서와 화해가 갖는 특별한 역할은 없다. 다만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고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면 그에 따라 용서와 화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¹³

발린트(J. Balint) 역시 법과 정의의 메커니즘이 화해의 증진에 중요한 역

11 David Crocker,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3, 1999, p. 545.

12 Claus Offe, "Transition Justice after Democratization: Options, Patterns, Objectives, Dilemma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Paper presented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5.

13 한상진, 「동아시아에서 본 응징의 정의, 용서 그리고 딜레마: 화해를 위한 최소주의자의 상호접근방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6 문명과 평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799~800쪽.

할을 수행함을 인정하지만, 화해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지속가능한 화해는 악행을 공적·제도적으로,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틀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정치적·법적 행위가 갖는 권위 없이는, 어떠한 화해도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연료를 공급하고 제도적 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화해의 실체는 법적으로 논의될 수 없고, 법적 담론의 형태를 떨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삶과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현실에 토대를 둔 다른 경로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며, 여기에서 법은 다만 멀리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발린트의 입장이다.¹⁴

2) 회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회복적 정의’다. 회복적 정의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회복적 정의를 사법적 관점에서 발전시키며 기본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제어(H. Zehr)는 “회복적 사법 정의는 범죄사건에 관련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며, 범죄로 인한 손상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찾아내어 채워져야 할 욕구와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최대한 바로잡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¹⁵ 또한 회복적 정의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손상을 치유하는(repairing) 것에 역점을 두는 이론이다. 이는 발생한 범죄의 모든 관련자들—가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도 포함—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을 통하여 최상으로 성취된다.¹⁶

14 Jeniffer Balint, “Law’s Constitution Possibilities: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Wake of Genocide and State Crime,” 2001.

15 Howard Zehr, *The Littlebook of Restorative Justice*, UNICEF, 2002, p. 37.

16 Daniel Van Ness and Karen Heetderks Strong, *Restoring Justice—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4th ed. New Province, N.J.: Matthew Bender & Co., Inc., 2010.

이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⁷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과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파괴된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강조한다. 제어와 마이카는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복적 사법은 침해된 규범보다 범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동등한 관심을 보여주며, 정의의 실현 과정에 양측을 관여시킨다. 셋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한다. 넷째, 가해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면서 가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의무가 가해자에게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이행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여섯째,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강제와 고립보다는 협력과 재통합을 장려한다. 여덟째, 피해자, 가해자, 처벌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존중을 나타내도록 노력한다.¹⁸

회복적 정의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벌이 오히려 한 사회와 국가를 범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회복적 정의론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들의 경우, 회복적 정의가 범죄 처벌의 대안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치유라는 형태의 건설적인 방법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¹⁹

특히 더프(A. Duff)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 이론

17 많은 학자들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사법정의 응보적 정의와 구분되는 회복적 정의의 모델이라고 평가한다(Martha Minow,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Boston: Beacon Press, 1998, p. 91).

18 Mark S. Umbreit et al.,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uette Law Review*, Vol. 89, 2005, p. 258에서 인용.

19 Bam van Stokkom, "Disorder Policing and Community Needs. 'Revising' Broken Windows Theory," in Easton, M. et al. eds., *Reflections on Reassurance Policing in the Low Countries*, Boom Legal Publishers, 2008.

은 회복적 정의론이 불의 이후 정의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처벌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회복은 화해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정리하자면 과거를 짚고 넘어가는 처벌과 함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관계의 회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회복적 정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 전후 보상

현재 한일 관계는 한 가지 관점으로 규정하기에는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다. 과거의 전쟁 범죄를 정당하게 처벌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후 처리 문제는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정벌적 정의론을 앞세워 법적 처벌을 주장하기에는 양국이 경제,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국제정의론이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회복적 정의만을 주장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의 한일 관계 해결에 필요한 회복적 정의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의미는, 피해자의 복권(復讐)을 위한 과거사 인정과 사과를 병행하여 양국의 오래된 감정과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 본연의 것을 지키면서, 전후 보상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최소주의적 관점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특수함을 고려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보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배상과는 다른 것으로, 사토 다케오(佐藤健生)는 속죄라는 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²¹ 야노 히사시(矢野久)는 배상은 전쟁으로 생긴 손해에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가에 행하는 것인 반면, 보상은 국가가 전쟁이나 박해에 의해 손해

20 Antony Duff, *Punishment, Communication and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 佐藤健生, 『過ぎ去らぬ過去との取り組み, 日本とドイツ』, 岩波書店, 2011.

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서 반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²² 양기호는 배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²³ 전후 보상이란 가해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원상을 회복시키는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해 국가가 전쟁으로 짓밟힌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도열은 전후 보상의 시행이 해당 국가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는 거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²⁴

다시 말해 배상과 보상은 그 대상과 의미에서 차이를 갖는다. 전후 처리에서 배상은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손해에 대한 지불인 반면, 보상은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속죄와 피해자에 대한 복권이라는 의미가 내재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구분에 기인하여 동아시아, 특히 한일 관계에서 전후 보상은 소극적인 형태의 회복적 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

1) 종군위안부 관련 일본 시민운동의 역사적 검토

전후 문제의 해결과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 다시 말해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상태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과거의 악행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한

22 矢野久, 「賠償と補償」, 『20世紀の中の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06.

23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제53집, 2002.

24 김도열,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인식」,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호, 2002, 64쪽.

사과다. 특히 과거 불의에 대한 철저한 인정은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와, 피해자의 잘못으로 불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복권(復權)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특히 중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후 처리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1970년대 기생 관광 반대운동을 둘러싼 매매춘 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중군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1기, 운동의 원천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제2기는 중군위안부 문제를 성 억압 내지 성폭력의 측면으로부터 부각시키기 시작한 1980년대 말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시작한 보상 운동의 강력한 기반이 완성되는 단계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일본 시민단체는 제4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군위안부의 전후 보상 실현에 대응하는 운동을 확대해 오고 있다.²⁵ 일본 시민단체의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구원을 위한 전후 보상 운동으로 집약된다. 이것은 수십 년간 가려졌던 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인권 문제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²⁶ 즉,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인권 회복 운동이 전후 보상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피해자 지원 운동단체들과 초국가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재일 한인 여성운동 조직인 ‘교회여성연합회’와 ‘매매춘문제에 도전하는 모임’과 같은 일본의 여성운동 단체들은 한국의 중군위안부 문제 운동가와 피해자를 초청하는 등 단체 본래의 목적 이외 부가적인 활동의 하나로 이에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새로운 운동 단체의 결성은 재일한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1991년 5월 오사카에서 ‘조

25 박화리, 「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민족연구』 제6호, 2001, 208쪽.

26 박화리, 「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207쪽.

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설립되었고, 11월에는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국적과 소속단체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단체 결성에 이어 기존 일본 YWCA와 같은 여성단체나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같은 시민단체도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새로운 단체 결성도 1991·1994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이 발족되었고, 1991년 1월에는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구성되었다. 연이어 1991년 5월에는 전술한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1991년 9월에는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그리고 두 달 뒤인 1991년 11월에는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한편 1993년 1월에는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그리고 일본 기독교 교회 소속의 '종군위안부문제를 대처하는 모임'이 1993년 6월에 발족되었다. '전쟁보상 네트워크' 역시 같은 해인 1993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또한 1994년 2월에는 '일본군에 의한 성적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모임'이 구성되었고, 1994년 9월에는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가, 1995년 8월에는 '아시아 여성 자료센터'가 설립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 가운데 '우리여성 네트워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일본부인회의', '종군 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등 12개 단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군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라는 연대 조직을 만들어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종군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의 정대협과 교류·협력해 나가면서,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재일한인민주여성회',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등 4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종군위안부에 관한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안부 110번'이라는 신고전화를 개설했다. 한편 이러한 사

레수집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나라(奈良), 고베(神戸) 등 각 지역에서 평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벌이던 시민그룹과 결합했다. 이에 지역 차원의 '위안부 110번' 활동 역시 전개될 수 있었다.²⁷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의 한 주요한 흐름을 이루며 평화 운동의 맥락에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확대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기독교 운동, 노동운동, 보수적인 지역운동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은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일본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²⁸

2) 대표적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

중군위안부 피해자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 중 '아시아-일본 여성자료센터'(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AJWRC)와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행동센터'(VAWW-NET)의 활동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일본 여성자료센터는 1995년 설립된 것으로 '아시아 여성연합'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① 아시아에서의 여성운동, ② 여성의 인권, ③ 발전 속에서의 여성, ④ 여성과 환경, ⑤ 전쟁과 무력 갈등 속에서의 여성, ⑥ 여성들의 국제 협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모은 자료와 정보를 다른 시민단체와 여성운동가들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²⁹

VAWW-NET은 1997년 도쿄에서 세계 20개국 40명의 해외 참가자가

27 이상봉, 「재일한인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2006, 275쪽.

28 정진성, 「일본의 평화운동: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 1998, 63~64쪽.

29 <http://ajwrc.org/eng/>.

모여 개최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족되었다. 이어 1998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가 중심이 되어 일본 VAWW-NET을 창설했다. 국제 VAWW-NET과 연대하여 무력 분쟁 하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VAWW-NET은 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 ‘전시 하의 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 사회의 규범을 공유하며 2000년 도쿄에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주최했다. 가해국 일본의 여성이 피해국 여성들과 연대한 이 전범 법정은 개정 4일째에 국제공청회, ‘현대 분쟁 하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개최했는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등 17개국 여성들이 무력 분쟁 하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했다. 국제공청회에서 위안부 생존자도 함께 증언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님을, 위안부가 전쟁 중의 ‘성노예’였음을 일본 사회에 인식시켰던 것이다.³⁰

전범 법정은 시민 법정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裕仁) 천황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전범 법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소추하지 못했던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10명을 기소하고 전원에게 인도에 대한 죄를 적용하여 성노예제에 대한 개인과 상관의 책임을 물었다. 총 30개국으로부터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전범 법정은 95개 해외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전범 법정은 일반 대중이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³¹

일본 VAWW-NET이 위안부제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위안소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 VAWW-NET은 위안부 피해를 심각한 인권 침해에서 더 나아가 ‘인생 피해’로 인식한다. 위안소에서의 성적 폭력 이후에도 불임, 외상후 스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평생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으

30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013, 411쪽; 414쪽.

31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9쪽; 일본 VAWW-NET, 2006.



출처: 여성전쟁평화박물관 홈페이지(<http://wam-peace.org/about/floor/>)

여성전쟁평화박물관 전시실

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 당하게 되면서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점은 여성의 존엄과 인간 존엄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VAWW-NET의 전쟁 범죄 담론은 위안부제도를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위안부의 인생 피해로부터의 구제와 여성의 존엄, 인간 존엄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³²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구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여성전쟁평화박물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이다. 도쿄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2005년 한 시민활동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최초로 전쟁 중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다. 여기에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고서와 일본제국 당시 천황과 군인들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방문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

32 이케다 운영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9쪽에서 재인용.

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노예’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일본 군인의 진술을 영상자료로 볼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두었다. 최근에는 후속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위한 특별 전시회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³³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론적 접근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단체다. 이들은 인권대회도 주최해 왔는데, 1993년 ‘전시하의 인권 침해’라는 주제 아래 제36회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국의 전시하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1월에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변호사연합회는 이 제언에서 최초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입법 조치로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고노담화 발표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등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해왔다. 뿐만 아니라 1994년 ‘여성과 개발에 관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에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1995년 제4차 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행동강령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성노예제’에 위안부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위안부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위안부가 된 경위, 위안소로의 배치, 위안소에서의 생활 실태를, 군의 지령으로 징집되어 군법, 비(非)군법을 불문하고 일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 관계도 없이 완전한 무권리 상태, 마치 군의 소유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노예 상태로 인지했다.³⁵

33 <http://wam-peace.org/en/>.

34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0쪽; 414쪽.

35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발언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보고서와 부속문서로 위안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 맥두갈(Gay J. McDougall)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공식적으로 전시하의 성노예제로 규정되었으며 맥두갈 보고서에서 위안소는 강간소로 규정되었다. 일변연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직한 제언으로 평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414쪽 재인용).

이 외에도 일본기독교단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설을 지원하는 모임’은 정대협을 통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전후 배상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1996년부터 후원을 해왔다. 특히 후원금의 일부는 정대협이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을 위해 쓰여 왔는데, 이 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기억과 가르침,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폭력의 인정, 이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촉구 또는 실시해오고 있다. 시민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회복적 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일본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목소리는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 일본의 우경화, 민족주의적 움직임과 같은 반 성찰(反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우익들의 중간 역할로 인해 한일 간의 오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반응과 구조적 한계

전후 보상에 대한 일본 국내의 요구와 국제 사회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종군위안부 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1994년 6월 22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가키자와 고지(柿澤弘治) 외상은 ‘위안부’ 보상에 관해 “민간 차원에서 선의”라는 형태로 ‘민간기금재단법안 요강안’을 제시했다. 그의 제안 중 ‘국민의 협력’이라는 항목은 ‘민간의 선의’를 구체화한 부분으로 “국민은 과거 침략 전쟁의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책무를 이해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

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배상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모금을 위한 민간기금 운영비, 모금을 위한 홍보비 등 사무경비 부분 등을 지출하고, 보상금은 철저히 민간에서 거두는 모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함께하고 싶다는 담화와 함께 ‘평화우호교류계획’의 발족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상 대신,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10년간 1000억 엔 상당의 사업으로 조사, 연구, 교류를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1994년 12월 자민당 회의에서도 “배상과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의적 입장에서…폭넓은 국민 참여로”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최종안으로 발표했다.³⁶ 즉 정부가 개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정부의 자금으로 종군위안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논의는 1995년 7월,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관방장관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사업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기금은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민간 자금의 보상, 민간에서 거두는 기금,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정부 자금의 지원,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솔직한 마음의 표명, 역사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사업 등의 내용으로 1995년 8월 정식 발족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과거 위안부에 대한 배상금은 1인당 200만 엔이 책정되었으며,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의료복지금 300만 엔 등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 각출의 의료보조금을 민간의 기부금과 같이 지급함으로써, 법 제정에 의한 공식적인 보상은 피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한편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은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무라야마내각의

36 정진성, 「군·위안부」, 손승철·조광, 『한일역사의 쟁점 2』, 경인문화사, 2010, 140~141쪽.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전후 50주년 시일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단체 그리고 피해국 정부와 이루어지는 협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정식 법안으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금 창설을 유엔 등 국제 사회에 선전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반발을 초래했다. 1995년은 'UN 여성 10년' 선포 이후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였다. 이미 UN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베이징회의의 주요 쟁점이 되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일본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일본이 급하게 '아시아 여성기금'을 발표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여성기금은 국제 사회를 향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³⁷ 결국 일본 정부는 기금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다.

우선 민간 모금이라는 보상금의 성격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를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범한 죄를 국가가 배상하지 않고 민간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한다는 기금의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자는 보상의 대상인 동시에 보상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이는 피해자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이념과 내용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그 어떤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 위안부 피해

37 아라이 신이치,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김태웅 옮김, 미래 M&B, 2006, 87~89쪽; 김도열,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인식」, 78쪽.

자의 절반 이상이 보상금 수취를 거부한 결과가 나타난 것도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다.³⁸

5. 나가며 – 독일의 전후 보상이 주는 교훈

많은 이들이 전후 처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꼽는 곳이 독일이다. 또한 전후 관계 회복에서 독일과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후 보상과 관련하여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독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도덕적, 물질적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1953년에 독일연방보상법(BEG: Bundesentschädigungsgesetz)을 제정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보상법으로 나치스 범죄의 희생자 개인에 대해 보상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보상대상자, 보상청구권, 담당기관, 그리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3년 후에 다시 제정된 1956년의 연방보상법은 그 대상 범위를 법인과 예술가 및 학자, 그리고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도운 사람이나 오인되어 피해 받은 사람들에까지 확대했다. 독일연방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연방보상법 발표 이후 2003년까지 나치 시대 희생자들에게 총 614억 유로(79조 82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한 배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도 최소한 100억 유로 이상을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강제 노동자를 포함한 개인 피해자 보상은 독일에서도 꽤 장기간에 걸쳐 논의돼 온 문제였다. 독일연방보상법이 강제 수용소에 있던 외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강제 노동자들을 보상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⁹ 외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

38 矢野久, 「賠償と補償」, 260쪽; 우에노 지즈코, 「아시아여성기금의 역사적 총관」, 한일 연대 21,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186~189쪽.

39 보상의 대상은 독일 국민이거나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의 주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전쟁 당시 독일과 적대적이었던 국가의 국민은 제외되었다. 또한 전쟁 배상에서도 외국인 강제 노동자는 배제되었다. 전후 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한 1953년의 '런던채무협약'(Londoner Schuldenabkommen)의 제5조 2

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독일이 실시해 온 ‘나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 법원, 그리고 이들을 강제 고용했던 기업들은 강제 노동에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야당인 녹색당은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1989년 6월에 ‘나치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방 재단’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폴란드와의 사이에 ‘나치 지배 하에서의 폴란드인 강제 노동자에게 개인적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포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사회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⁴⁰ 결국 이러한 노력과 압력에 반응하여 강제 노동자 보상 문제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독일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⁴¹ 1999년 12월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0년 7월에 관련 7개국이 국제보상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재단 설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⁴² 이에 따라 독일 정부와 대기업들⁴³이 절반씩 출자한, ‘기업·책임·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법’에 의해 강제노동과 그 밖의 개인상의 피해와 관련한 보상 신청 업무는 동 재단의 7개 협력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역시 협력단체들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다. 현재까지 재단의 공동 발기인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었거나 독일의 점령지였던 국가나 국민이 독일제국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국이나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는 … 이 배상문제의 최종적인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한다.” 이로써 강제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잠정적인 유보에서 장기적인 보류가 되었으며, 이들의 보상요구를 막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274쪽).

40 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72~73쪽.

41 독일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 피해가 유발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익의 고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비판과 압력이라는 국제 정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2 박재영·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2009, 121~122쪽.

43 도이치방크, 드레스드너방크, 알리안츠, 다이물러크라이슬러-벤츠, 지멘스, 바이엘, BMW, 폭스바겐, 티신-크롭, 베르텔스만, BASF 등의 기업이 재단에 출자했다.

인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국제적 협력단체들의 조력에 힘입어 100여 개국, 약 166만 명의 강제노동 희생자들에게 44억 유로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했다. 동시에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협력단체들과 연계해 휴머니즘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갔다.⁴⁴ 2002년 기준, 연방배상법에 의한 집행과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가 지급한 액수는 504억 유로(약 84조 원)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보상은 계속되고 있다.⁴⁵

특히 ‘기업·책임·그리고 미래’ 재단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 기업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기억과 미래’(Erinnerung und Zukunft)라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 기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이해, 인권,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사례로 생각하는 독일도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처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 전후 처리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미 진행되어온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이 적지 않았으며, 앞으로 발전할 여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들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에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점 등이 아쉬운 것이다.

애증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기성세대의 일본에 대한, 혹은 일본 기성세대의 한국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애증이 아닌, 화해라는 큰 틀에서 회복적 정의

44 박재영·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2009, 139쪽.

4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ntschädigung von NS-Unrecht — Regelungen zur Wiedergutmachung Ausgabe,” 2003, p. 38.

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의 회복적 정의가 동아시아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회복적 정의일 필요는 있다. 아직 완전하게 인정과 용서로 나아가기에는 전후 처리, 역사 갈등, 영토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접근이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데 조금이나마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4 **Editor's Note** NAM Ki Jeong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 26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HUN Ja Hyun
- 50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NISHINO Junya
- 72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YOO Hyuck Soo
- 102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 134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 168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 196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 224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NAM Ki Jeong
- 264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KIM Young Jak
- 290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SHIN Ki Young

RESEARCH NOTE

- 308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SHINDO Muneyuki

ARTICLES

- 328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CHOI Yun Young

일본비평
관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대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차례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26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50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니시노 준야
7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10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확정 50년	조윤수
134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박영준
168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196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224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264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290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연구노트

308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신도 무네유키
-----	--	---------

연구논단

328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최윤영
-----	------------------------------	-----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